

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부
 실업 보험
 노스 캐롤라이나 주 롤리
 XX 임직원 보고서

대리점 이용 전용

책임자: () () 선거	_____20_____
() () 제 96-8 조(5) 심사원.	_____
종료 날짜:	_____
_____20 신청 승인자.	_____
종료 된 편지 발송:	_____
20 NCGS 96-11 (종료)	

과

보상 해지를 요청하십시오.

1 월 1 일부터 유효

을/를 대신하여 _____
 (사업, 가정, 농장, 동업자, 기관, 등)

제 _____ 계좌, 저는 North Carolina 의 법인 NCGS 96-11 에 따르면 실업 수당 보도 종료 요청한다.

저는 법령에 따르면 제 요청은 취직보증과로 인정되어야 하고 종료를 요청하기는 제 책임이라고 이해한다. 보도가 NCGS 96-8(5)a, NCGS 96-8(5)b, NCGS 96-8(5)k or NCGS 96-8(5)e 에 따라 필요하면 본 신청서는 종료를 요청하는 년의 3 월 1 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안다. 보도가 NCGS 96-8(5)n 이나 NCGS 96-8(5)o 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신청서는 종료를 요청하는 년의 3 월 1 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보도가 NCGS 96-8(5)b 에만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료 신청서는 취직보증과가 선임자가 NCGS 96-11 에 따라 신청서를 하는 권리가 있는데 하지 않다고 밝혀서 취직보증과로 발행된 법적 책임에 대한 신고의 날짜부터 6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 재활성화 결과로 된 종료 신청서는 취직보증과의 재활성화에 대한 신고의 발급부터 12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

초기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결정은 2 년이상 동안 유효할 경우에는 종료 신청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신고의 발급부터 9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

취직보증과는 NCGS 96-8(5)에 따르면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전에 고용자로 서명된 아무 보고서나 문서, 또는 성명서를 확인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권리가 있는 아무 고용 엔티티를 위해 종료를 인정할 수 있다.

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본 문서가 포함하는 정보가 맞고 정확하는데 서명한 사람은 본 고용자를 대신하여 본 선서 진술서를 실행하는 권리가 있고 본 신청서는 성실하게 행동하여 North Carolina 주 취직보증법의 제 96-11 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도를 종료하는 권리가 있다고 믿어 작성된다고 증명한다.

날짜 _____ 20

서명한 사람 _____

직위 _____

<p>공증인 면전에서 서명되었다</p> <p>날짜: 20 _____</p> <p>_____</p> <p>공증인</p> <p>효력 기간이 끝날 날짜: 20 _____</p>
